

제4장 이용계약

제1조 (계약의 목적)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(센터)와 이용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 향상 및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, 센터 이용에 따른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함이다.

제2조 (이용계약 및 기간, 절차)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센터와 이용자(또는 보호자) 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, 등급 변경이나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③ 이용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장기요양인정서
2.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3. 건강진단서(전염성 질환 유무 확인용)
4. 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센터가 필요로 하는 서류

제3조 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) ①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월 이용료는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고시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」 등에 따르며, 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(일반)를 본인이 부담한다. 단,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로 하며,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법정 감경률(6%, 9% 등)을 적용한다.

2.비급여 대상(기타 비용부담액)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4조에 따르며, 식사재료비(일반식, 간식비 등), 이미용비등 기타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센터 내 게시된 금액으로 한다.

3.이용자는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을 이용계약서에 명시된 납부일 및 납부 방법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.

제4조 (신원인수인 및 이용자의 권리·의무)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센터와 이용자, 신원인수인(보호자) 간에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,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신원인수인의 권리

가.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나.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연락받을 권리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
다. 표준 장기요양서비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정보 요구와 서비스 불만족 시 시정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라.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2. 신원인수인의 의무

가.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나. 이용자가 센터 서비스 이용 시 고의로 인해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파손에 대한 책임

다.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의 의무

라.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의무

마. 이용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데 따른 채무 발생 시 변제의 책임

바.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
사.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센터에 통지해야 한다.

- *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
- * 신원인수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
- * 기타 신원인수인으로서 의무이행이 어려울 때

3. 이용자의 권리

가. 센터의 시설물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

나. 센터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받을 권리

다. 인권(사생활, 학대 방지, 위생, 의료 및 건강, 프로그램 등)을 보장받을 권리

라. 타 이용자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

4. 이용자의 의무

가. 월 이용료 납부 의무

나. 센터 내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

다. 센터 내 개인 애완동물 반입 금지 등 청결 의무 라.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

제4조 (계약의 해제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의사에 따라 이용 종료(퇴소)를 결정할 때
2.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3.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받고, 다른 이용자나 종사자에게 전염을 시킬 우려가 있을 때
4. 2회 이상 이용료를 연체하고도 사유 및 기한을 약속하지 않을 경우(고의성)
5. 센터 내에서 센터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6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종사자에게 폭력으로 인한 상해를 가할 경우
7.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